

의안번호	2206072
의 퇴 인	송재봉 의원
회 답 일	2024.12.19.
추 계 번호	24E55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상계 전력거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의 상계 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를 신설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308억원 등 2026~2030년간 총 1,981억원(연평균 39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누적	연평균
신·재생에너지의 상계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(제106조의11)	-308	-347	-391	-440	-495	-1,981	-39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6조의11(신·재생에너지의 상계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)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·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(한국전력) 간 상계(相計)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·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6조의11(신·재생에너지의 상계전력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가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추계기간으로 설정
 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- 소규모 신·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가구(상계 전력거래 가구)의 수전전력량 및 역송전력량에 따른 총 공급가액 및 전기요금 현황 자료(한국전력공사 제출)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감소분 추계
 - 수전전력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해당 가구에 공급한 전력량
 - 역송전력량은 해당 가구가 신·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보낸 전력량(상계거래 전력량)
- 2024년 이후 상계 전력거래 가구의 수전전력량 및 역송전력량은 최근 4년간(2020~2023년) 수전전력량 및 역송전력량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
- 2024년 이후 공급가액 및 전기요금은 매년 수전전력량 및 상계거래 후 전력량(수전전력량과 역송전력량의 차이)과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
 - 2024년 이후 전력량에 따른 공급가액 및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하며, 누진 구간 변동에 따른 요율 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

- (전기요금 상계제도) 자가소비 목적의 소규모 신·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대하여 해당 가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량을 차감(상계)하여 전기요금을 환산·청구하는 제도
 - 전기사용과 관련하여, 각 가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
 - 전기요금은 한전이 송전한 전력량과 신·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가구가 한전에 역송전하는 역송전전력량을 별도로 계량하여 상계처리 후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·청구
 - 부가가치세는 한전이 송전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가액의 10% 부과

나. 추계 방법

- 최근 5년간 소규모 신·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가구로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를 한 가구의 전력량 및 전기요금 등 현황은 다음과 같음
 - 2024년 기준 상계전력거래 가구의 총 수전전력량은 2,319Gwh, 역송전전력량은 1,507Gwh이며, 수전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가액 총액은 4,406억원, 상계 후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기요금 총액은 1,972억원
 - 2024년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전력량 및 청구요금 추세가 연말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이를 12개월분으로 환산한 값임

[표 2] 최근 5년간 상계 전력거래 가구 수, 전력량, 전기요금 및 공급가액 현황

(단위: 가구, Gwh, 억원)

구 분	가구 수	전력량			공급가액 (수전전력량 기준)	전기요금 (상계후 전력량 기준)
		수전전력량 (A)	역송전전력량 (B)	상계 후 전력량 (A-B)		
2020	440,159	1,477	992	485	1,927	698
2021	506,656	1,692	1,119	573	2,217	844
2022	561,719	1,877	1,335	542	2,663	967
2023	613,699	2,086	1,410	676	3,554	1,347
2024.1.~10.	655,539	1,933	1,256	677	3,671	1,644
2024(환산) ¹⁾	655,539 ²⁾	2,319	1,507	812	4,406	1,972

주: 1) 2024(환산)은 2024. 1.~10.까지의 전력량 등 현황을 12개월로 환산한 값임

2) 2024년 10월 말 기준 가구 수

자료: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개정안에 따르면 상계 전력거래 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에서 전기요금으로 변경되므로, 2024년 기준 부가가치세수 감소 규모는 244억원으로 추정

- 개정안에 따르면 상계된 전력량(역송전력량)의 공급가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
 - 현행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2024년 공급가액 4,406억원의 10%인 441억원이고 개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2024년 전기요금 1,972억원의 10%인 197억원이므로, 세수감소 규모는 441억원과 197억원의 차액인 약 244억원

□ 추계기간 동안 상계 전력거래 가구의 수전전력량 및 역송전력량, 공급가액 및 전기요금 등 현황은 다음과 같이 추정

- 추계기간 동안 수전전력량 및 역송전력량은 2024년 전력량에 최근 4년간(2020~2023년) 연평균 수전전력량 및 역송전력량 증가율(수전 12.2%, 역송 12.4%)을 적용하여 산출
- 추계기간 동안 공급가액 및 전기요금은 수전전력량 및 상계거래 후 전력량(수전전력량과 역송전력량의 차이)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
 - 2024년 이후 전력량에 따른 공급가액 및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하며, 누진 구간 변동에 따른 요율 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음

[표 3] 추계기간 동안 상계 전력거래 가구의 전력량, 공급가액 및 전기요금 현황
(단위: Gwh, 억원)

구 분	전력량			공급가액 ³⁾ (수전전력량 기준)	전기요금 ⁴⁾ (상계 후 전력량 기준)
	수전전력량 ¹⁾ (A)	역송전력량 ²⁾ (B)	상계 후 전력량 (A-B)		
2026	2,921	1,906	1,014	5,548	2,464
2027	3,277	2,143	1,134	6,225	2,755
2028	3,678	2,410	1,267	6,986	3,079
2029	4,127	2,710	1,417	7,839	3,441
2030	4,631	3,048	1,583	8,796	3,846

주: 1) 수전전력량은 최근 4년간(2020~2023년) 수전전력량 연평균 증가율(12.2%)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

2) 역송전력량은 최근 4년간(2020~2023년) 역송전력량 연평균 증가율(12.4%)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

3) 공급가액은 수전전력량에 비례하여 증가

4) 전기요금은 상계 후 전력량에 비례하여 증가

자료: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앞서 추정한 상계 전력거래 가구에 대한 공급가액 및 전기요금 현황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감소분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-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308억원 등 5년간 총 1,981억원(연평균 39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감소효과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누적	연평균
공급가액(A)	5,548	6,225	6,986	7,839	8,796	35,394	7,079
전기요금(B)	2,464	2,755	3,079	3,441	3,846	15,585	3,117
부가가치세수 감소분 (A-B)×10%	308	347	391	440	495	1,981	396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의 상계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를 신설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308억원 등 2026~2030년간 총 1,981억원(연평균 39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누적	연평균
신·재생에너지의 상계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(제106조의11)	-308	-347	-391	-440	-495	-1,981	-396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흥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흥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